

[별표 3]<개정 1988.1.30>

운전자 및 안내원의 준수사항(제17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관련)

구 분	준 수 사 항
공 통	1.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할 것 2. 운행시각을 정한 사업용 자동차에 있어서는 발차시간을 지킬 것 3. 여객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중에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외에는 대화하지 말 것 4. 자동차의 고장등으로 건널목에서 운행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여객을 유도하여 대피시키는 동시에 열차에 대하여 적절한 방호 조치를 할 것 5. 제28조 각호의 물건등을 여객이 타고 있는 자동차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
운 전 자	1.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확인할 것 2. 승무하고자 할 때와 승무를 종료한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점호를 받고 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고를 할 것 3. 질병, 피로, 음주 기타의 이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운송사업자에게 통고할 것 4. 자동차의 운행중 당해자동차의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할 것 5.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있는 장소를 통과할 때에는 여객을 하차 시킬 것 6.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변속 장치를 조작하지 말 것 7. 건널목을 통과하고자할 때에는 일단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할 것 8. 승무를 종료하고 교대하는 경우에 승무중의 당해자동차도로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이를 운전자에게 알릴 것 9. 삭제<1988.1.30> 10. 별표 1의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11. 안내원의 신호에 의하여 출발할 것 12.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안내원의 유도를 받을 것 13. 자동차를 후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안내원의 유도를 받을 것 14. 버스운송사업자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전자는 승무중 운전기준도를 휴대할 것 15. 음주하고 승무하지 말것 16. 여객이 타고 있는 자동차내에서 담배를 피지 말것
안 내 원	1. 여객이 운송의 안전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

	2.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유도할 것 3. 사업용 자동차를 후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하차하여 길 옆 및 장애물과의 간격과 노면 기타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당해자동차를 안전하게 유도할 것 4. 발차 신호는 여객의 안전 및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닫은 후에 행할 것 5. 정차전에는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출입문을 열지말 것
--	---